

장학금 지급 규정

1972. 3. 1. 제정 1977. 3. 1. 개정
 1981. 3. 1. 개정 1983. 3. 1. 개정
 1984. 3. 1. 개정 1984.. 8.18. 개정
 1986. 1.14. 개정 1987. 1. 1. 개정
 1987. 3. 1. 개정 1988. 3. 1. 개정
 1988. 9. 1. 개정 1989. 3. 1. 개정
 1992.12. 1. 개정 1994. 3. 1. 개정
 1994. 9. 1. 개정 1996. 3. 1. 개정
 1996. 9. 1. 개정 1997. 9. 1. 개정
 2000. 3. 1. 개정 2001. 1. 8. 개정
 2002. 3. 1. 개정 2002.12. 1. 개정
 2003. 2. 1. 개정 2004.10. 1. 개정
 2005. 3.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9. 1. 개정 2007. 4.27. 개정
 2008.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1. 1. 1. 개정 2011.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4. 9. 1. 개정
 2015. 3. 1. 일부개정 2016. 3. 1. 전부개정
 2017. 3. 1. 일부개정 2018. 3. 1. 일부개정
 2019. 3. 1. 일부개정 2020. 3. 1. 일부개정
 2020. 7. 1 일부개정

<학생지원부, 대학원 행정실, 각 특수·전문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의 학부,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금 기부자 및 각 장학단체의 지급기준과 장학금별 내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금액) 교내 각종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학부장학금

제1절 종류

제4조 (장학금 구분) ① 학부장학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장학금 : 학생자치활동, 봉사에 관한 장학금 및 정의장학금과 진리장학금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학금
 2. 정의장학금 :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필요기반 장학금
 3. 진리장학금 : 학업 및 연구 성취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기반 장학금
- ② 학부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교육부 등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과의 협약과 관련된 장학금 집행시 의무대응비율이 적용된 교내장학금도 포함)
 2. 기금장학금 : 이전 학년도에 적립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3. 교외장학금 : 당해 학년도 외부장학재단, 단체 및 개인이 기탁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4. 국고장학금 : 교육부 등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제5조 (위원회) 학부장학금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장학총괄위원회를 두며,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세종캠퍼스는 별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절 자유장학금

제6조 (종류 및 지급대상) ① 자유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장학금 : 본교(의료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본교 “학비보조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2. 대학봉사장학금 : 학생자치활동 부서에서 근로봉사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대학리더장학금 :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및 집행부 중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장학금
 4. 사회봉사장학금 : 각종 지역 사회 봉사 또는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우수학생선수 장학금 :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자 또는 우수한 학생선수 중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고려대-개운사 프런티어 장학금 : 본교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 중 개운사에서 추천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7.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외손 포함) 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8. 제4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학금
- ② 제1항의 장학금별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제3절 정의장학금

제7조 (종류 및 지급대상) ① 정의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로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면학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소득분위와 장학금 신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3. 근로장학금 : 교내 행정업무 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KU드림장학금 :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또는 부모 1인 이상이 한국에 귀화한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소망장학금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장애인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재해장학금 :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7. 기금장학금(교비) : 기부자의 장학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교비에서 집행하기로 한 장학금으로 해당 대학(학부)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8. 특별장학금 : 학업활동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교학)처장, 학장(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9. 오픈캠퍼스장학금 : 자연계열(의대 제외) 신입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성북구민 자녀 중 성북구청에서 추천한 2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0. 고대가족장학금 : 형제·자매가 동시에 본교 학부 또는 대학원(일반·특수·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학부 재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1.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별 해당 재단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12. 국가우수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수학생 선발자에게 해당 재단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13. 국가근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사업에 지원한 학생에게 해당 재단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14. 제4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학금
- ② 제1항의 장학금별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제4절 진리장학금

제8조 (종류 및 지급대상) ① 진리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lobal KU 장학금 : 국제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본교생,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국제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 외국인 신(편)입생 및 그 멘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리더십국제인턴프로그램장학금 :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해외인턴십 파견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진리형(프로그램)장학금: 매 학년도 학교가 선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안암장학금 : 인재발굴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수시전형 최초합격자 중 단과대학(학부)별 1명씩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다만, 세종캠퍼스는 따로 정함
5. 크림슨장학금 : 인재발굴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수시전형별 및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1~2명씩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다만, 의과대학은 10명 내외로 선발하고,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따로 정함.
6. 단과대학장학금 : 세종캠퍼스 신입생 수시 및 정시전형에서 모집단위 계열별 입학성

- 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7. 신입생우수장학금 : 세종캠퍼스 신입생 수시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8. 과학인재장학금 : 인재발굴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특기자전형 과학분야 전체모집인원의 10% 이상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9. 정시신입생장학금(A,B) : 인재발굴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정시 신입생 장학금(A)는 정시모집 합격자 중 4명 내외로 선발하고, 정시 신입생 장학금(B)는 정시모집단위 단과대학(학부)별 1~2명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다만,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따로 정함.
 10. 성적향상장학금(A,B) : 성적경고해제자 중 성적이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다만,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따로 정함.
 11. 제4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학금
- ② 제1항의 장학금별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제5절 신청 및 지급

제9조 (신청 및 지급) ①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 ·외 장학금 공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해외 교환·방문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은 본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장학금은 사전에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등록금을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납부기간의 경과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1. 등록금 납부기간 중 :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처리
 2. 등록금 납부기간 종료후 : 학적부상에 등재된 학생 명의 계좌 송금
- ④ 해당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생(근로장학생 제외). 다만, 인턴십 참여 등 장학금의 지급 성격상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근로장학생 제외). 다만, 연속장학생을 제외한 복수전공자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을 연장한다.
 3.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4. 자퇴생 또는 제적생 및 수료생
 5.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학생

제10조 (자격의 박탈 및 반납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위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2학기 이상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연속장학생의 경우는 계속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중지된 학기도 지급 학기에 포함한다.
- ③ 입학성적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로 충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중수혜) ① 수업료 지원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 ② 근로·봉사·재해장학금,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 각종 프로그램장학금 등 학업보조비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와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 ③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국고장학금, 교외장학금, 기금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 ⑤ 장학금 이중수혜 등으로 반납안내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장학금 지급 및 교내시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일반대학원, 전문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제 12조 (종류) 일반대학원,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대학원 장학금
- 2. 전문대학원 장학금
- 3. 특수대학원 장학금
- 4. 삭제 <2013.3.1.>
- 5. 교외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제 13조 (일반대학원 장학금) 일반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 14조 (전문대학원 장학금) 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 15조 (특수대학원 장학금) 특수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 16조 (교외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장학단체 또는 독지가 장학금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특수대학원의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3항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신설, 제5조, 제7조2항 개정)
- ② (경과조치) 제7조 제2항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7조의 4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신설, 제5조, 제7조, 제8조 개정, 제20조 조명변경, 제7조 내지 제11조와 제14조 내지 제20조, 제24조 내지 제34조 조번호변경)
- ② (경과조치) 제13조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제5호 삭제, 제30조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제24조 내지 제30조, 제38조 신설, 제5조, 제7조, 제8-1조,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42조 내용변경,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조명변경, 제31조 내지 제 42조 조번호 변경)

- ② (경과조치) 제29조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7조 3항 건축학전공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5조 신설, 제6조 제25호 추가, 제10조 개정, 제16조 4항 추가, 제32조 신설, 제34조 삭제 및 조번호 변경, 제35조 삭제 및 개정, 제36조 신설, 제40조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개정, 제10조, 제12조 신설, 제13조, 제15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2조 조번호 변경, 제36조, 제43조 내지 제46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6조 개정, 제38조 신설, 제39조 내지 제42조 조번호 변경)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장학금급여규정'을 '장학금지급규정'으로 규정 명칭을 변경함)
- ② (경과조치) 제8조 제5항 제1호에 대하여 의과대학 대학원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6조 제7호의 '학생가장장학금'을 '미래로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제26조, 제36조, 제39조 개정, 제40조 삭제, 제41조 내지 제42조 조번호 변경)
- ②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조, 제8조 및 제40조 개정)
- ② (경과조치) 제40조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6조 조 삭제 및 신설, 제6조의 1 조 신설, 제7조 2항,3항 신설, 제17조 조 삭제 및 신설, 제26조 삭제, 제33조 내용변경).
- ② (경과조치) 2012학년도 제2학기부터 제19조(내용변경, 항 삭제 및 신설)와 제20조(내용변경, 항 삭제 및 신설)를 적용하며, ‘성적우수·면학장학금 지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제9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용 변경, 제11조 조, 제36조 제4호 및 제40조 삭제)
- ② (경과조치) 제8조, 제9조, 제11조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의 1, 제9조, 제17조 내용 변경)
- ② (경과조치) 제9조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 ①항]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의 1]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①항, 제8조 ①항, 제10조 ①항]

부 칙

- ① (시행일) 위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내지 제11조 개정)
- ②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8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내규의 폐지) 과학영재장학금, 신입생면학장학금 지급내규는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제1항제9호]

부 칙

- ① (시행일) 위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1항제13호와 제8조제1항제4호,제5호,제8호,제9호 내용변경, 제10호 신설,제11호 개정)
- ② (적용대상)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8호,제9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1호 개정)